도시설계와 경관계획의 관계 그에 따른 건축가의 역할

류흥렬건축사사무소

주제발표의 배경 및 목적

- 도시경관의 미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러 관련 법과 제도는 건축물이라는 최종 결과물을 위한 과정.
-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시 토목 및 도시,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건축적 측면의 계획 및 고려가 소홀.
- 도시설계의 최종 목표인 건축물 시공시 민원발생에 따른 주민 마찰 및 계획 변경 사례, 불법건축물의 발생이 빈번.

-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등 도시경관계획 수립시 지역적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역 건축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계획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함.

- 본인의 경험을 통해 도시설계의 일부 오류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



도시 및 경관 관련법에 나타난 건축가의 역할

- 건축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경관법,
- 상기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건축가에게 도시디자인의 중추적인 역할이 부여되지만 실제 도시 및 경관계획 수립시 건축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



건축기본법

- 제2조(기본이념)

1. 국민의 안전 ·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 제3조(정의)

1.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2. "공간환경" 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 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함.
3. "공공공간" 이란 가로 · 공원 ·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
4. "건축디자인" 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 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5. "품격" 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함.
6. "품질" 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함.
7. "건축" 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함.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한 기준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

- 관련 법조항 :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 및 획지, 교통처리계획 등.
-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항 1.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의 8번 조항의 내용 :
  1.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
  2.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경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실례를 통해 본 지구단위계획의 오류

1. 건축법의 일조권
2. 주차계획(회전반경)이 미흡한 도로구조
3. 통행이 불편한 보도
4. 지정된 건폐율 확보 불가
5. 지정된 용적률 확보 불가
6. 주차장 용지 확보 불가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1. 건축법(일조권)에 따른 고려없이 부지 조성을 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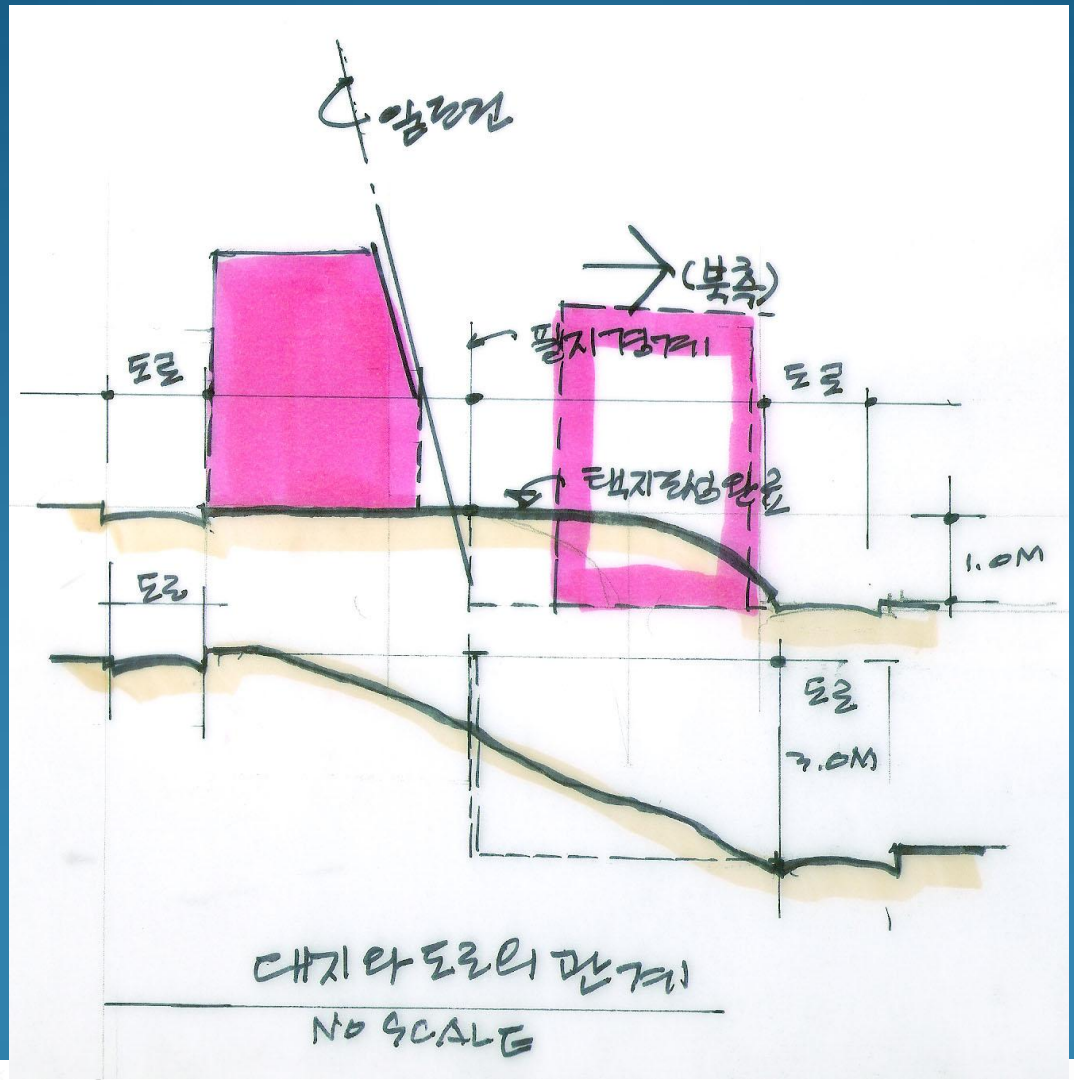



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계획과 상이하게 설계된 도로구조 (회전반경 미확보로 중앙선 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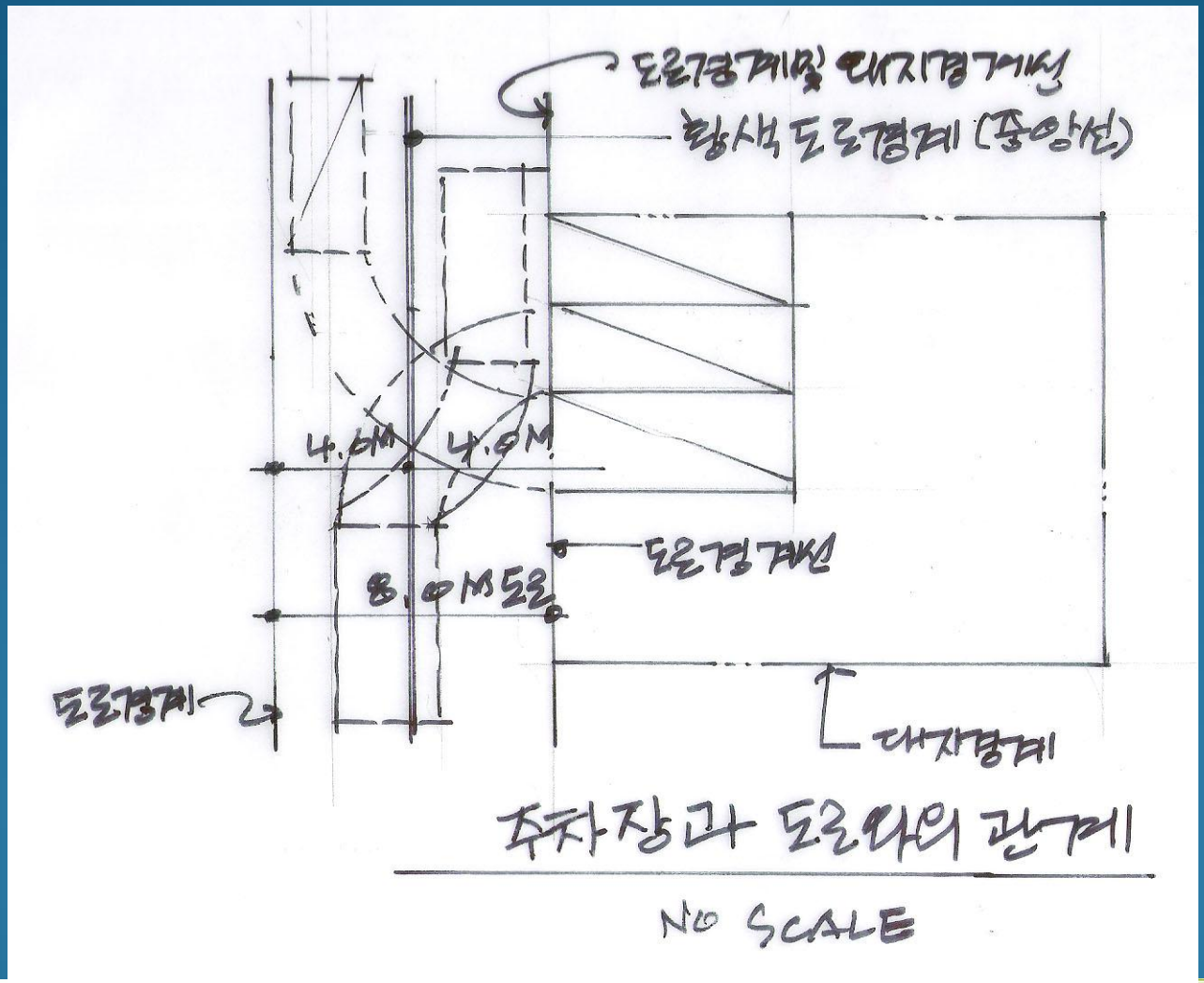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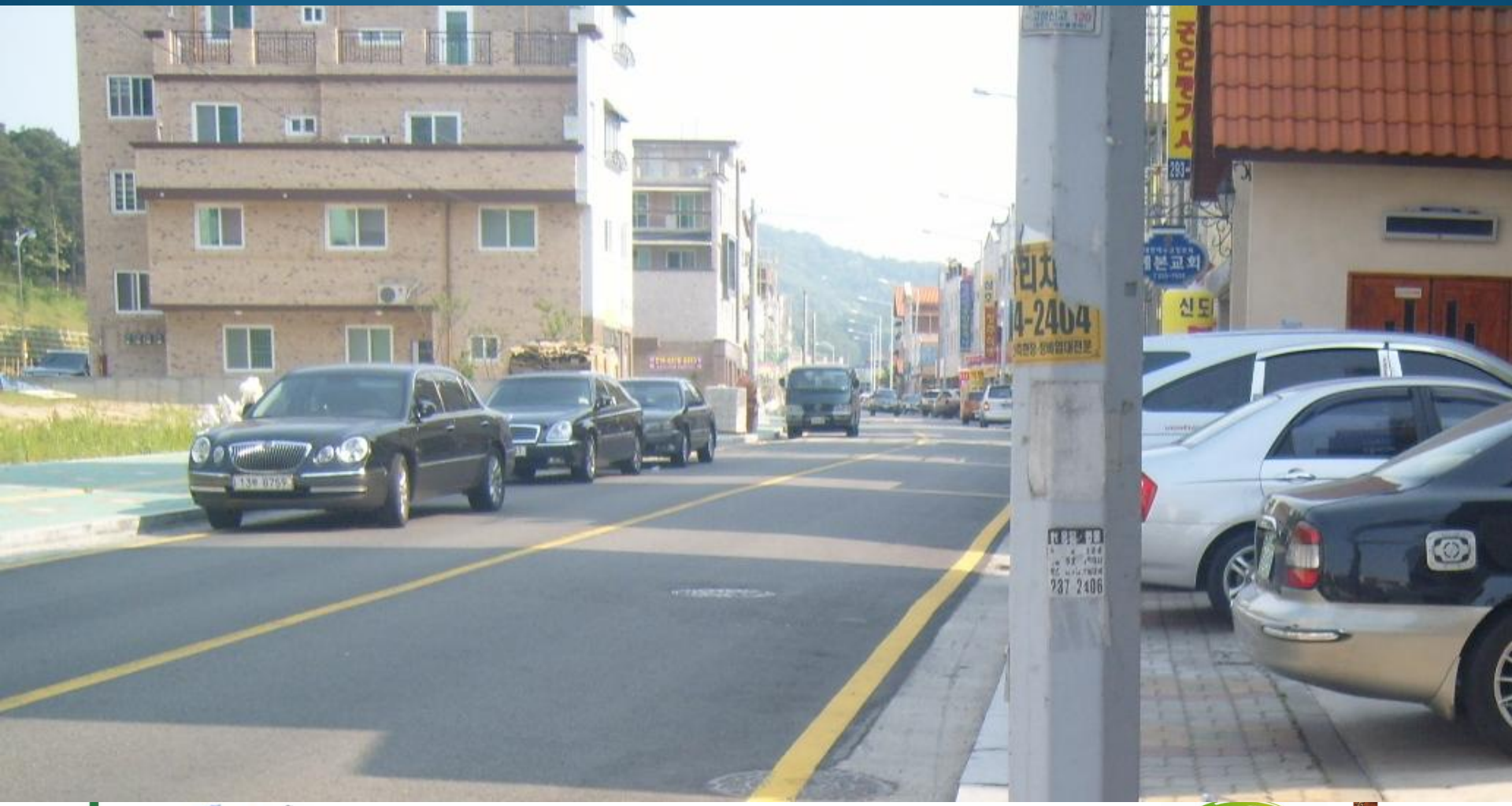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3. 교차보행이 어려운 인도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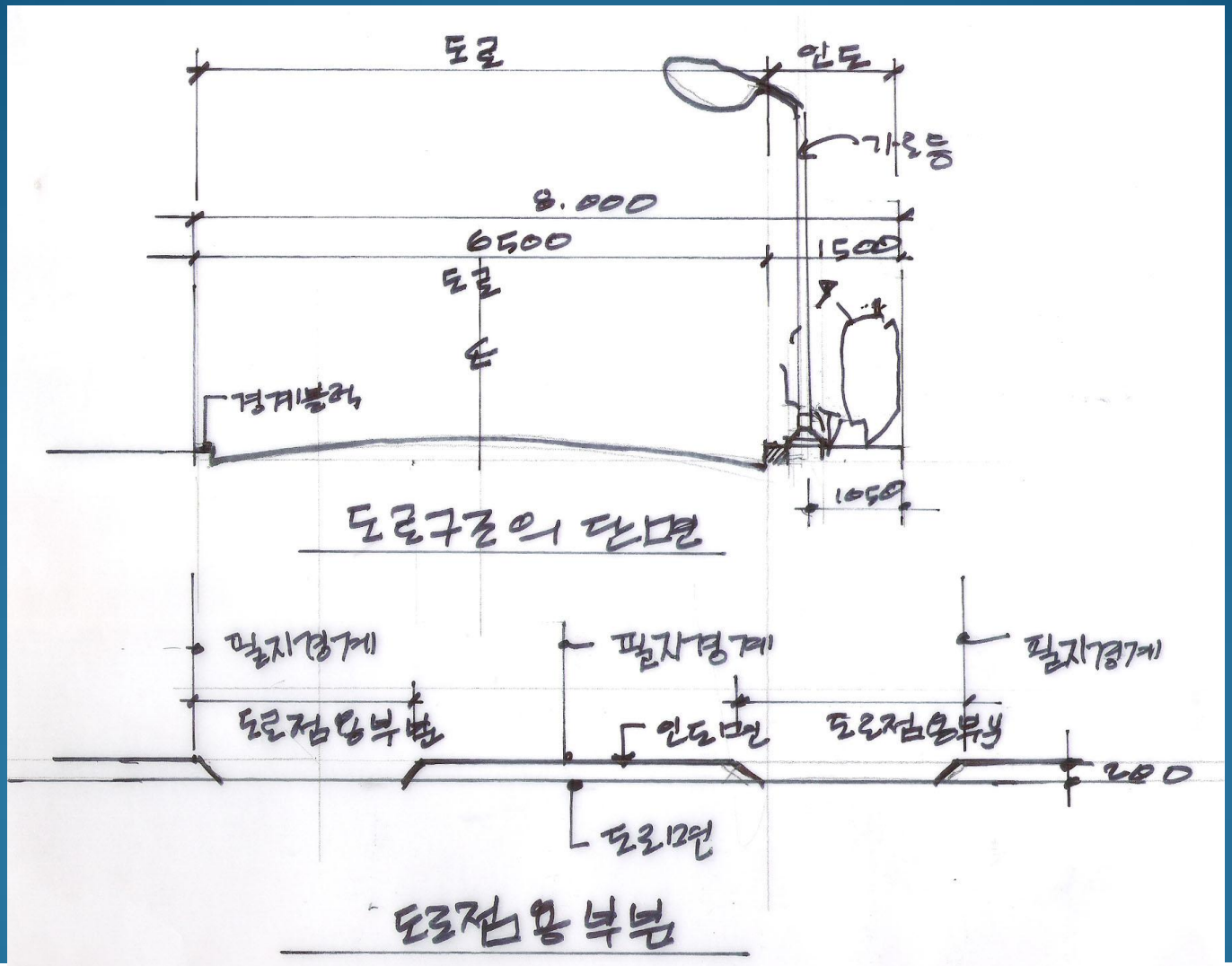


엠보물

4. 지정된 건폐율 확보 불가

[건폐율이 지정되었음에도 주어진 건폐율이 건축 가능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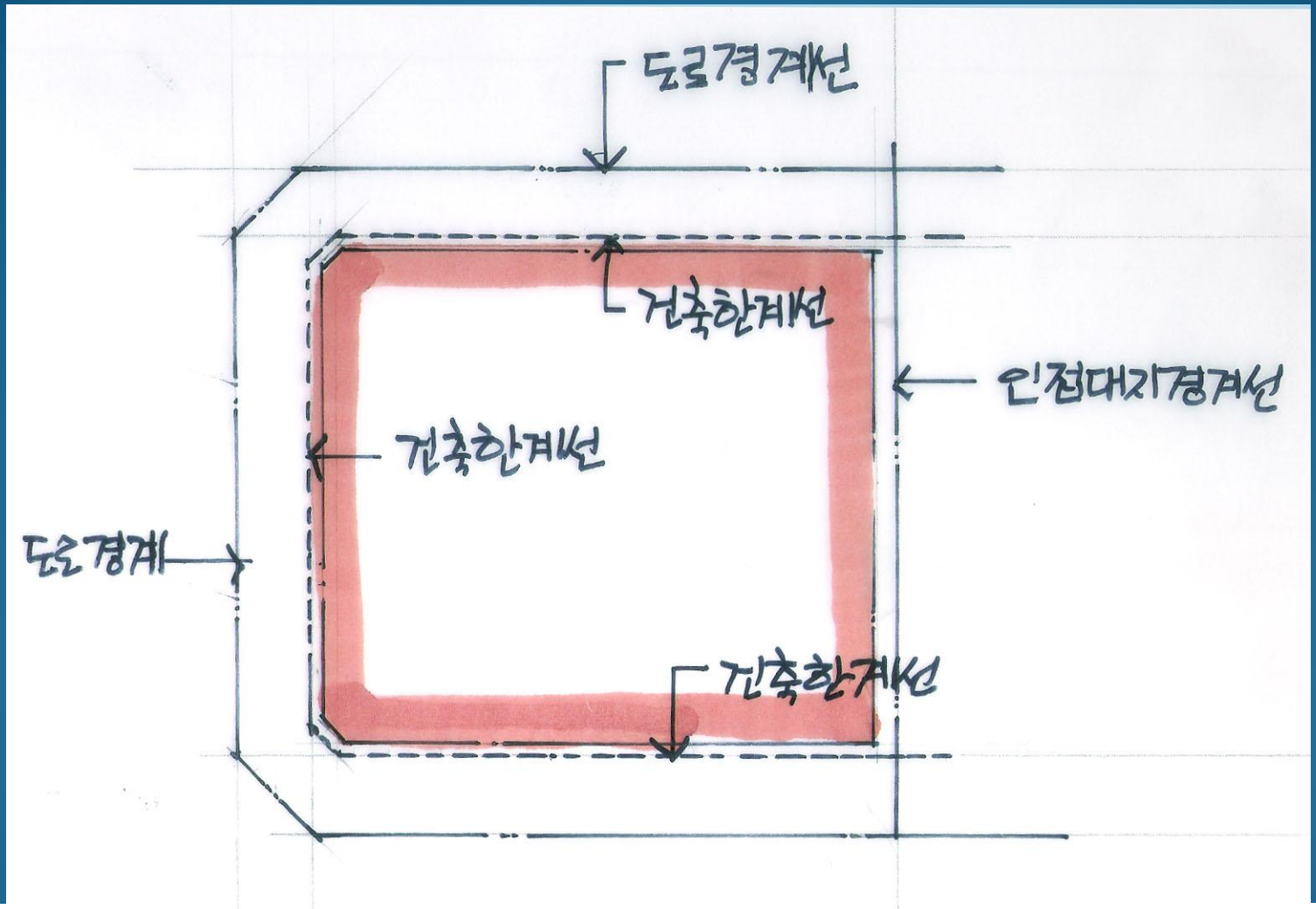

5. 지정된 용적률 확보 불가

[건축법 적용으로 인한 지정된 용적률이 나오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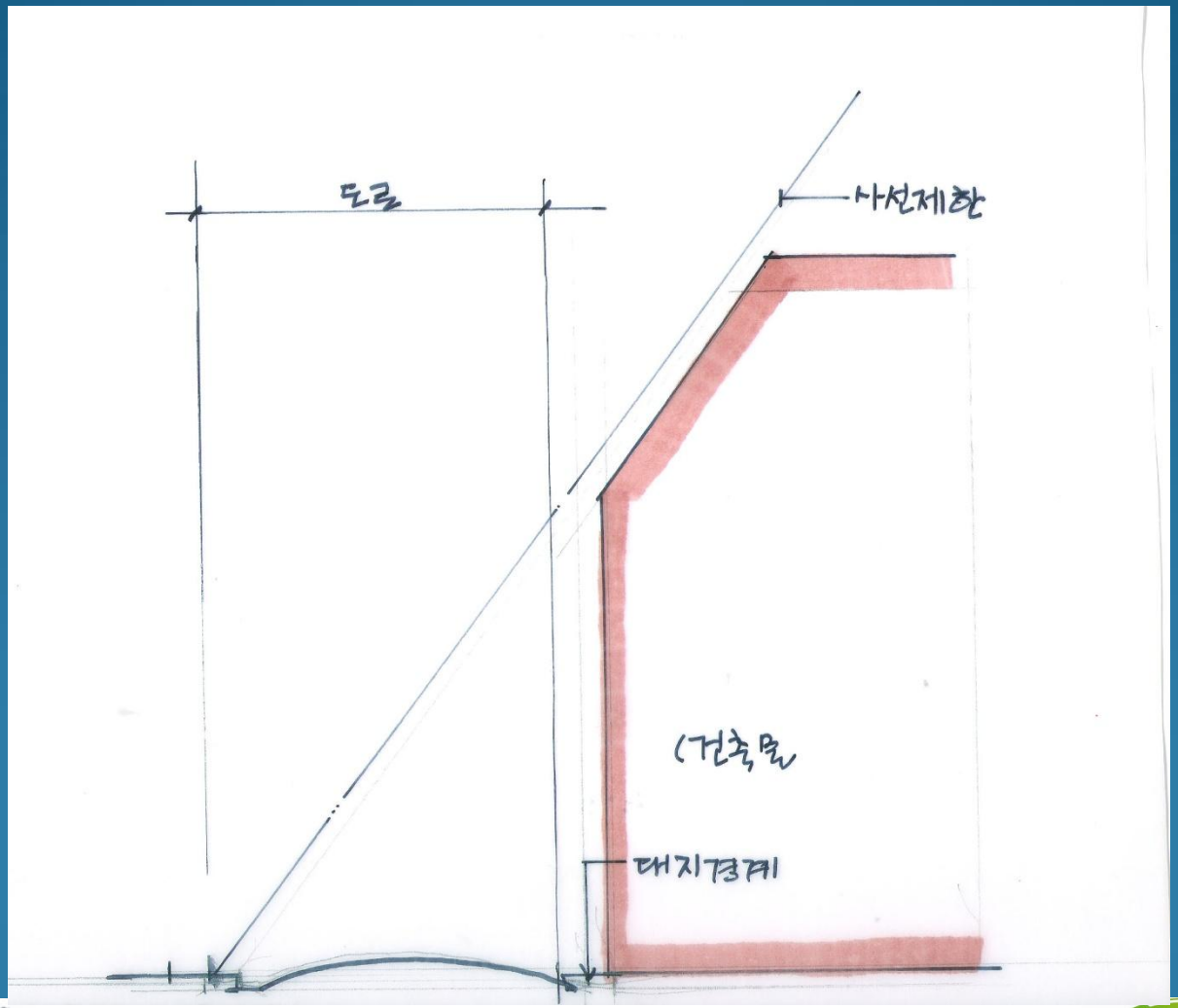

6. 주차장 용지 확보 불가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 용지 필지 구획 - 건축법 제 58조 시행령 80조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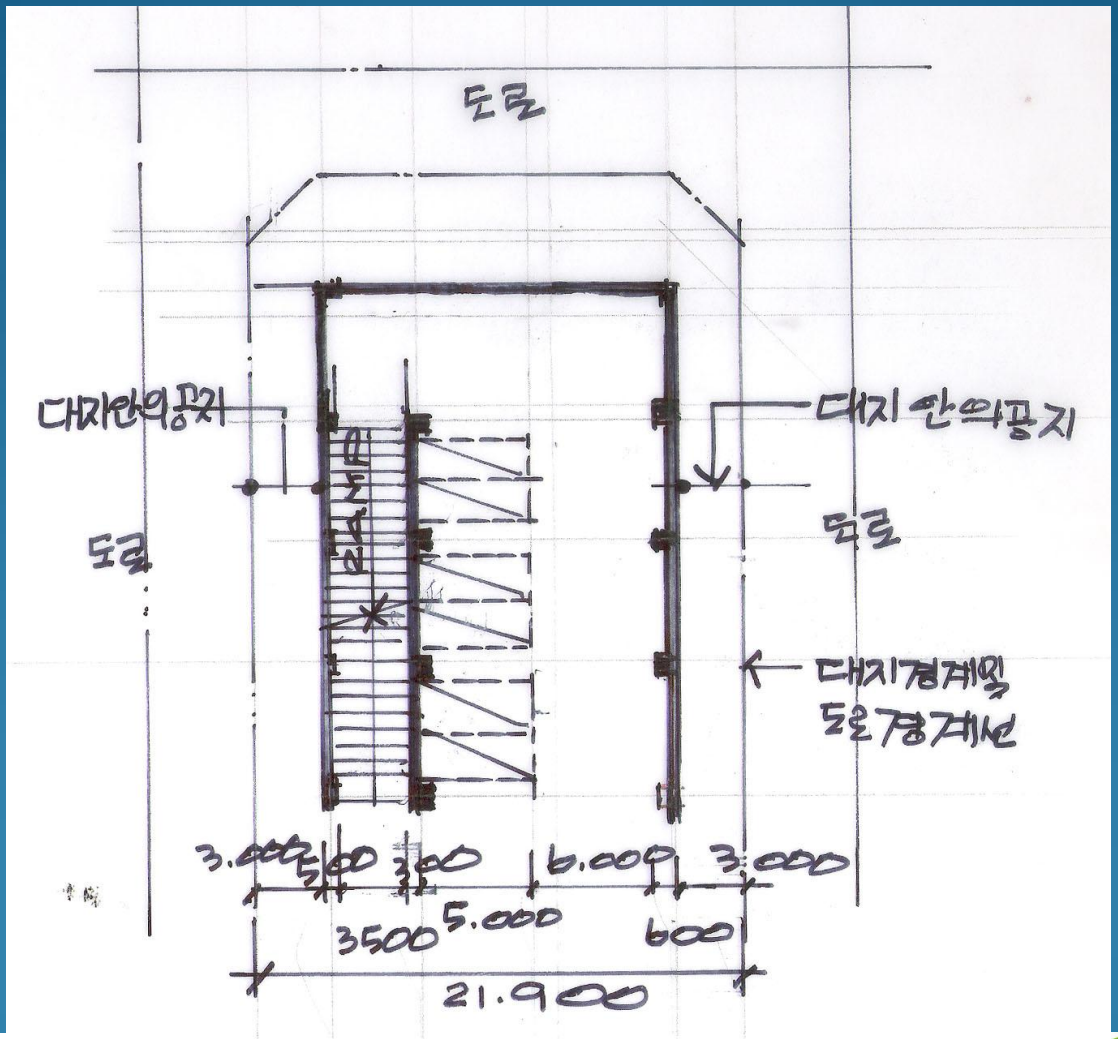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의 사례

- 일본 혼슈 나가노현 중부에 위치한 중소도시.
- 면적 919.35㎢ /인구 22만 8,438명(2008)
- 현청 소재지인 나가노에서 남서쪽으로 75㎞, 도쿄에서 서북쪽으로 240㎞ 떨어진 곳에 위치.
- 2000년 지방자치법 상 일반적인 환경행정·도시계획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례시로 지정.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위치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완충녹지 공간-식재

특징	■ 보도지면과 단차없이 조성된 가로식재공간.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유리. ■ 명쾌한 가로 디자인. ■ 식물은 지면위에 식재되어 있어 관리에 용이.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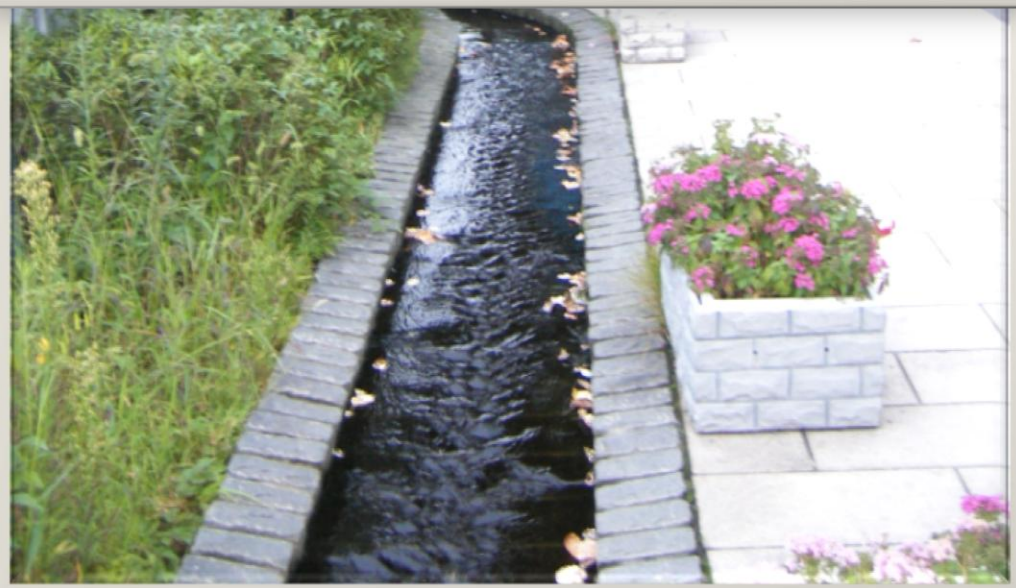

완충녹지 공간-수로

특징	■ 보도와 차도 중간에 설치된 완충녹지 공간에 폭이 좁은 수로를 설치. ■ 도심가로속 수변공간을 연출. ■ 도심의 기온상승(열섬, 열대야)을 감소.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완충녹지 공간

특징	▪ 가로등은 색상과 형태를 강조하여 신호등 기둥, 배전반 등 타시설물보다 시인성을 높임.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경계블럭

특징	■ 보차분리를 위한 이동식 경계 블럭. ■ 보차공간은 단차 없이 조성.


酒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교량안내 지주

특징	■ 교량안내 지주 상부에 전통형태의 가로등을 설치.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신호등

특징	■ 주변의 방호울타리와 조화를 이룸.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맨홀

특징	■ 일본 각 지방의 맨홀디자인. ■ 지방특색을 띤 맨홀디자인을 통해 도시디자인 요소로 부각.



보행자 안내판

특징	■ 지역의 문화와 역사 요소를 안내판에 적용.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쌈지공원

특징	■ 가로코너부분에 설치되어 시인성 확보. ■ 보도와 단차 없이(베리어프리)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을 향상. ■ 공원한쪽에 지역의 유래를 알리는 안내석이 설치.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일본 쿠마모토현 아트폴리스 (ART-POLIS)사례

- 초기에는 공공 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일종의 도시미화운동으로 공공건축물로 시작하여 현재는 민간건축물 대다수가 아트폴리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성공 사례.
- 1983년 모리히로 호소가와(細川護熙)가 현의 지사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 현재까지 디자인조례를 통해 지역색과 고유 문화를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 100여 개를 등록.
- 최근 지역의 젊은 건축가가 추축이 되어 건축주, 관공서, 건축가 등 3개 전문가그룹의 활동을 통해 진행하며 관공서에서는 건물디자인의 규제가 아닌 지원에 주력.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중국 상해 북경의 사례

- 80년대 이래 중국 건축은 점차 개방적이고 겸용하는 추세로 나아가 중국현대건축은 다원화의 방향으로 비약적인 발전.
- 최근 도시디자인계획 박람회 개최, 전통건축과 초고층 빌딩의 공존, 파격적인 건물디자인, 건물의 리모델링정책 등을 통해 도시디자인정책에 주력.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

결론 및 제언

현재 도시설계 및 경관계획의 문제점

- 도시디자인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은 토목 및 도시 전문가로 편중된 경향이 강함.
- 건축적 고려가 미흡하여 건물사용시 불편함을 초래, 불법건축물이 증가하여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침.

제언

- 도시설계는 도시라는 틀 안에 최종결과물인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건축관련법과 건축계획적 요소가 중요.
- 도시디자인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립시 도시경관 향상 및 시행착오 감소를 위해 초기설계단계에서 건축전문가그룹, 민+관+학(지역건축가+건축직공무원+건축연구자)의 참여가 절실함.
- 도시설계는 법률적 검토 아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은 단독이 아닌 동시병행 수립되어 상호 연관,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CHEONGJU JIKJI CHEONGJU KOREA 1377